

2019 인천교육플랫폼 운영지원단

저작물 이용지침
교수학습지원센터

낱말퀴즈

양 품 은 신 하 을 정
는 당 용 명 품 사 심

정 품 을 사 용 하 는
당 신 은 명 품 양 심

01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 25조 학교목적 등에서의 이용

5단계 OX 퀴즈

학교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범위

- ① 원격수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 ② 방과후수업의 특강 강사도 가능하다.
- ③ 수업준비를 위한 이용 및 공유 가능하다.
- ④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 모두 가능하다.
- ⑤ 입학전 학생이나 학부모도 가능하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근거

2017.3.

저작권법 제25조 2항

2016.3.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2015.6.

수업목적의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edu-i 사이트에서 저작물 공유는 합법?

수업 또는 수업지원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조 제2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수업 및 수업지원의 개념

-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 수업은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야간수업, 계절제수업, 시간제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그리고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포함한다.

- 수업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가 사용된 수업자료를 시·도 교육청 등의 관리·감독하에 공유할 수 있다.

각종 수업자료의 개발과 작성, 교사들간 자료를 공유하는 행위
교원이나 학생을 위한 강의지원이나 자료제공

수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교사 개별적 연구 및 교재 개발 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과외활동

교육 환경조성이나 개선 활동

학교교육계획에 근거하지 않는 동아리,동호회

학급경영, 학교통신문작성, 학교홈페이지 관리

수업의 주체

학교,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교원이나 그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교사·교수(전임교원, 겸임교수, 초빙교수)·강사(이하 “교사 등”이라고 한다)이다. 여기서 ‘교사 등’에는 보조교사, 파견교사, 특강강사 등도 포함된다. 방과후과정 등에서 강의를 하는 학교 행정직원이나 교육위원회 위원 등도 수업의 주체에 포함된다.

수업의 대상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수업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일반인 대상 특별 강좌’, ‘입학 전 예비강좌(pre-school)’ 등은 수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⁴⁴³⁾ 다만, 학부모나 일반인이 참여하는 1회성 공개수업 등은 수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⁴⁴⁴⁾

저작물 일부분 분량

수업목적의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어문 저작물 (논문, 소설, 수필, 시 등)	전체 10%(1단원)
음악 저작물	20%(최대 5분)
영상저작물	20%(최대 15분 이내)
이미지/사진/짧은 글	전부

수업을 위한 전송시 필요한 조치 의무

접근 제한

수업을 받는 학생만으로 권한 제한

학부모가 참여하는 SNS 공간에서 유의

복제 방지

우측마우스, 복사단축키 제한/웹보안

경고문구

저작물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책임

본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는 O학년 O반 학생들의 수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O학년 O반 학생들만 접근하여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목적으로 내려받은 자료는 다른 곳에 옮겨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고,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료는 이 사이트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항들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불법 행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처표시의 의무

수업 또는 수업지원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때는 이용하는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⁴⁸⁴⁾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출처명시위반죄가 성립되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⁴⁸⁵⁾

박미국, 『미국의 독립』, 미국 출판사(1800), p231~268.

박OO, 「도시에서의 생활」, 『OO신문』, 2016.03.21, 67면.

보상금 지급 의무

수업 또는 수업지원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주체 중 대학 이상의 학교, 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은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약칭해서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이라고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는 면제

어문저작물 1%, 음원 50초, 영상 1분은 제외

공정한 인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남의 저작물을 쓰는 것’이라는 문구이다. 이것은 남의 저작물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저작물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저작물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저작물들을 발췌하여 가져다 쓰는 것은 인용이 아니라 무단 이용이다.

목적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범위

정당한 범위-주종관계

공정관행

출처표시, 인용부호 등

02

폰트 저작권

폰트 저작권 소송

윤디자인 관계자가 증거로 제시한 위반사례는 광범위하다. 학교에서 작성되는 각종 보고서와 가정통신문 등 문서파일은 물론이고, 교실 뒤편 게시판 안내문구, UCC 자막,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 활자가 들어간 곳곳에 윤서체가 쓰였다. 심지어 교육청 공식문서에 사용된 것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 학교에서 무단 사용해왔고, 일부 학교가 그렇지 않았더라도 순환근무제 특성상 위반사례가 타 학교로 얼마든 전파될 수 있다"며 "향후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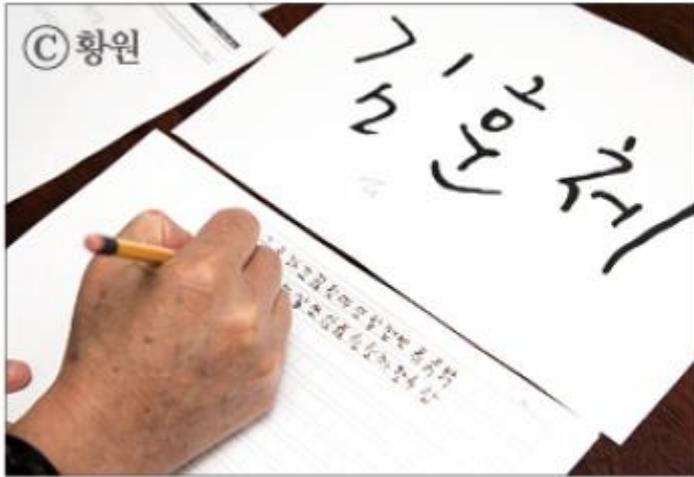
윤서체 업체, 인천시교육청 상대 소송... 법원, '100만 원 지급' 판결

청구한 손해배상금 4000만원에서 100만원만 인정... 항소심 진행 중

17.06.07 15:08 | 최종 업데이트 17.06.07 15:09 | 장호영(icnewsj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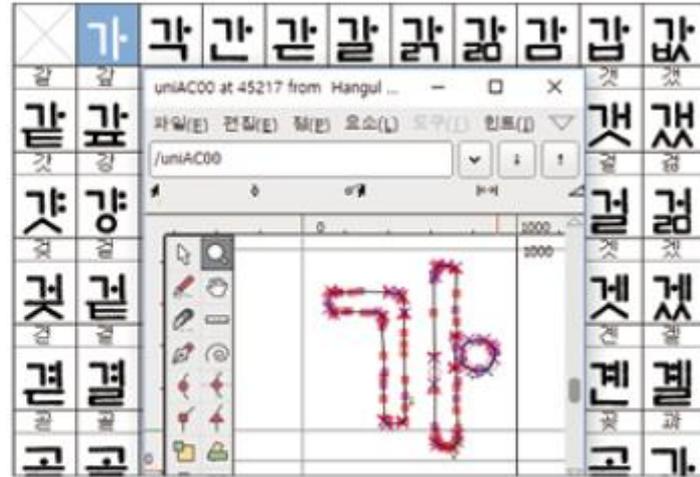
▲ 윤디자인 측이 제시한 폰트 저작권 침해 증거자료. 이 업체 관계자는

폰트 저작권 개념



【글자체】

폰트는 글자도안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님



【글꼴 파일】

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대상임

출처 : 글꼴파일 저작권 바로알기, 한국저작권위원회

폰트 저작권 위반이 아닌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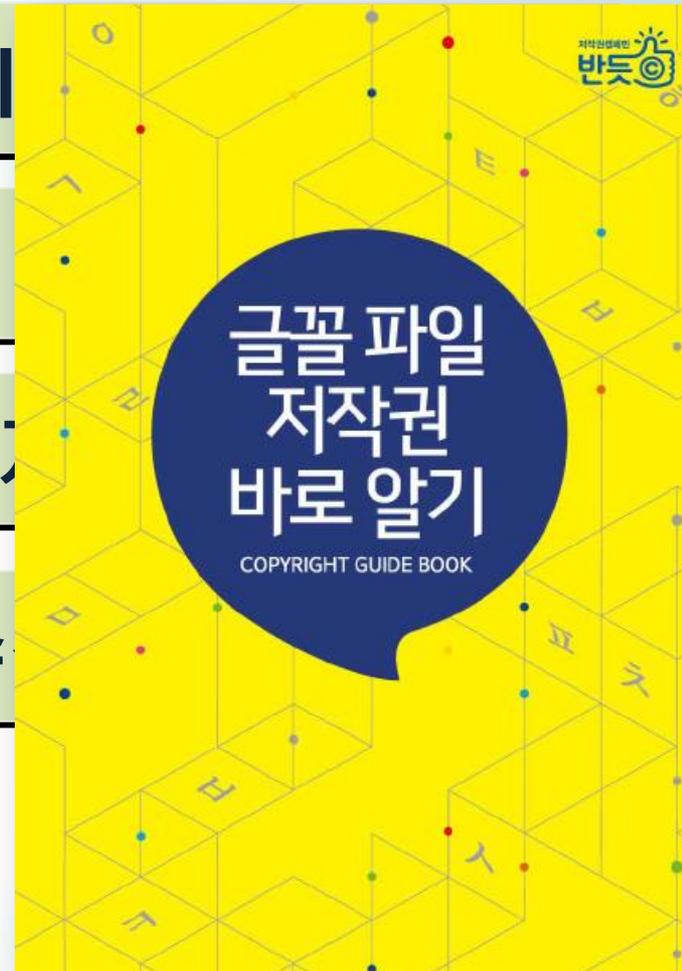
한글의 번들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경우

외주업체가 제작한 PDF를 홈페이지

홍보 리플릿을 이미지로 변환해

인터넷에서 유료폰트 포함된 이미지

다른 사람이 작성한 한글문서를 수



폰트 사용시유의

무료폰트라도 라이선스 확인 (범위, 이용조건, 기간)

사용 대상	개인사용자가 비상업적·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단체, 커뮤니티, 공공기관 등은 소핑몰 구매 또는 사용계약이 필요 합니다)
사용 용도	개인의 비영리 활동 작업물로서 개인의 문서 작성 및 소장 자료, 인쇄물, 웹페이지 이미지, 블로그 이미지, 동영상, PDF 제작에 한정됩니다. 단, PDF를 온라인상에 배포 및 게시할 경우에는 e-Book 계약이 필요합니다. (용도에 대한 해석이 궁금하신 경우,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상담 불가)
사용 제한	개인사용자라 하더라도 상업적·영리적인 목적 (금전 취득 목적 및 홍보, 마케팅, 프리랜서 작업 등) 의 사용 및 폰트의 임의 수정, 변경, 대여, 공유, 재배포, 재판매, 번들 탑재, APK변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당사의 무료폰트 정책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폰트검사기로 유료폰트 발견시 번들폰트로 교체

감사합니다.